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계 · 시정 요구

제 목 ○○-○○1 도로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(교육과건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○○○○본부)

② 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○○○○본부)

내 용

위 관련자 중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1. 15.부터 2015. 1. 11.까지,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1. 12.부터 2018. 3월 현재까지 ○○-○○1 도로
개설공사 공사관리관 업무를 수행하였다.

울산광역시(○○○○본부)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사업(○○-○○1)
을 시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.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
지 66,542,000,000원을 교부¹⁾받아 집행하고 있으며, 2013. 1. 4. 경기도 ○○시 ○
○구 ○○○로 000 ○○○○○에 있는 ○○○○(주) (대표자 ○○○) 외 3개사²⁾
와 ‘○○-○○1 도로개설공사’를 총 공사비 96,438,071,284원³⁾에 도급계약하고 같
은 해 1. 10. 착공하여 2019. 12. 31.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다.

1) 공사비의 50%

2) ○○종합건설(주) (대표자 ○○○), ○○건설(주) (대표자 ○○○), ㈜ ○○종합거설(대표자 ○)

3) ‘17.12. 111,757,000,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,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,

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국고보조 도로건설사업 시행지침(국토교통부지침 2016.12.23.) 제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시행자(울산광역시)는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고, 같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교부정지 및 상계, 반환청구,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.

총사업비 관리지침(기획재정부지침 2017.1.1.)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착공이후의 물가변동, 시설의 안전 강화,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

한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,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.

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와 관련이 없는 ○○대교 조감도 작성과 인도교설치공사 설계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울산광역시(○○○○본부)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사업 ‘○○-○○1 도로개설공사’를 시행하면서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필요한 ○○대교 조감도 작성비(15,914,000원)⁴⁾와 인도교설치공사 설계비(74,000,000원)⁵⁾를 위 공사 설계에 반영하여 교통혼잡도로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등 [표]와 같이 총 89,914,000원 상당이 국고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⁶⁾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⁷⁾

[표]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고보조금 목적 외 집행 내역

<단위 : 원>

사업명	목적 외 집행 내역			
	건명	집행액 (a+b)	국고보조금 (a)	지방비 (b)
계		179,828,000	89,914,000	89,914,000
○○-○○1 도로개설공사	○○대교 조감도	31,828,000	15,914,000	15,914,000
	○○대교 인도교설치공사 설계비	148,000,000	74,000,000	74,000,000

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4) 총 31,828,000원에서 국고보조금 50% 해당 금액. ○○대교의 이해 및 홍보활동 등의 목적으로 제작

5) 총 148,000,000원에서 국고보조금 50% 해당 금액. 인도교는 ○○강 대공원(○구)과 ○○공원(○구)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중

6) ○○대교 조감도 작성비 기성금지급('14.12.22. 31,828,000원), ○○대교 인도교설치공사 설계비 기성금 50%지급('15.12.11. 74,000,000원)

7)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로 사용된 89,914,000원 에 대해서는 울산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겠다는 조치계획 제출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국고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부당하게 사용한 국고보조금
89,914,000원 상당을 “반납”하시기 바랍니다.